

2016 장애인인권
다딤돌
걸림돌 판결



2016 장애인인권
다딤돌
걸림돌 판결

● 발표회
2016. 10. 31.(월)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지하 1층)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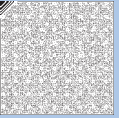
걸림돌 판결

● 발표회

2016 10. 31.(월)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지하 1층)



사단
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선정사

헌법의 규범으로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 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게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중략)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각하결정, 2002.12.18. 2002헌마52]

2002년 12월 어느 날이었다. 이 판결문의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오직 한 가지 생각이 났다. “나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구나.”였다. 그 때 중증 장애인들은 매일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고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동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기를 바라며 진행한 소송, 그 결과로 받은 판결이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직접 이동권에 관한 법을 만들기로 했다. 몸을 던진 투쟁의 결과 결국 2004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였다. 이제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고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은 이동권을 외치고 있다. 주목할 판결로 선정된 시외이동권 소송이 그 실례다. 이 소송에서 장애인이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할 권리를 법원에서 인정하고, 국가의 의무를 지키라는 판결이 나오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 허황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2016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들은 가까운 때에 이런 상상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치열한 논의와 진지한 열정으로 판결을 선정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송에 참여한 대리인이나 단체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책자에 함께 싣기로 하였다. 권리옹호활동의 확산과 사회의제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통하여 소송에 기여하는 장애인운동의 가치를 기억하고, 활동가들의 어려움과 보람, 다양한 활동을 함께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선정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판결의 사회적 영향력과 판결에 묻어나는 재판부의 고민을 읽고자 노력하면서 많은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건의 판결은 디딤돌적 요소와 걸림돌적 요소가 함께 있어 긴 시간의 토론 끝에 주목할 판결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수많은 후보 판결을 읽으며 특히 아쉬웠던 판결들은 작년에 걸림돌로 선정된 염전노예노동 사건과 판박이나 다름없는 판결들¹⁾이었다. 이 판결들에서는 장기간의 노동력착취에 대해 숙식 제공, 합의, 가해자의 고령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김양식장에서 25년간 강제적인 근로를 시킨 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개사육장에서 노예처럼 장애인을 부린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터무니없이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 잘못된 판결이 이후에도 두고두고 같은 논리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보게 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해자와 법원이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좌절감을 느꼈고, 부당한 판결이라는 점에 선정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에도 막상 이러한 판결들은 작년과 너무나 똑같은 것들이라 선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2727 판결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압적 수사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좋은 판결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작년에 선정된 판결과 너무 똑같은 취지라 선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피해 사건은 안타까웠다. 특히 양형 기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판결 선정을 위한 초기 작업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자원활동가 백정현님과 임익호님이 큰 기여를 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재도 많은 공익소송이 진행 중이다.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6. 10. 15.
위원장 박 김 영 희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합12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99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노804 판결 등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_6

선정 대상 판결 및 선정 기준, 선정 과정_8

디딤돌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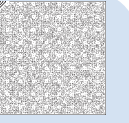
- 1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_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279 판결 |
- 2 조울증 치료를 받아 약물을 복용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_18
| 서울고등법원 2013나61901 판결 |
- 3 정신질환자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도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아닌 자가 동의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_24
| 대법원 2014다205584 판결 |
- 4 요양원 입소계약서의 면책조항은 면책약관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시 명시·설명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_2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2515 판결 |
- 5 장애인차량 LPG 할인지원 중단 후 관계기관의 협조가 미흡하여 계속 지급받은 할인지원금은 부당이득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 _28
| 대법원 2015다219733 판결 |
- 6 재판정 유예 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등록을 전산 삭제한 행위를 위법한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으로 본 사례 _30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479 판결 |
- 7 아동학대,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7년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_32
| 헌법재판소 2012헌마1030 결정 |
- 8 광주 인화학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교사직 사퇴를 요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_34
| 광주고등법원 2015나10096 판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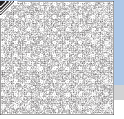
걸림돌 판결

- 1 지적장애 아동 성매수자를 상대로 성매수의 위법성을 내세워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_42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8013 판결 |
- 2 피해자들의 손이나 발을 결박한 행위는 감금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여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일 뿐 별도로 중감금죄의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_48
| 대구고등법원 2014노755 판결 |
- 3 외부 출입문을 시정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항소심> _54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37 판결 |
- 4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_62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가합225 판결 |
- 5 기숙사생활을 하던 지적장애인이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 학교법인의 관리 소홀 책임을 부정한 사례 _66
|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5685 판결 |
- 6 누범기간에 동거하는 뇌병변장애 6급 여성을 폭행, 협박, 강간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한 사례 _68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합53 판결 |
- 7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후 원고인 지적장애인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사건에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_74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5399 판결 |
- 8 아버지가 지적장애 1급 아들을 망치로 가격하여 살해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_7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111 판결 |

주목할 판결

- 1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시외이동권소송 1심> _8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791 판결 |
- 2 염전 노예사건의 민사소송으로 피고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사례 _86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합11231 판결 |





위원장

- 박김영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현)
 - 장애여성공감 이사(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휴학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여성위원회 위원 등 다수의 활동

위원(가나다순)

- 김 용 혁
-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변호사(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현)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
 - 굿네이버스 등 사회복지단체 근무
 -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등 장례절차 마련 연구」 등 다수 논문

- 김 재 양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현)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

- 유 재 규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현)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졸업
 - SBS 보도본부 기자

- 이 용 재
- 산간 법률사무소 변호사(현)
 -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지원변호사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활동
 -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관한 판결에 나타난 쟁점에 대한 검토」 등 다수 논문

제 철 응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 후건 · 신탁 연구센터 센터장(현)
- 한국성년후견학회 회장(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후견지원사업 중앙지원단 단장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등 다수 논문

최 정 규

-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현)
-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현)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간사

이 정 민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상임 변호사(현)
- 대한변협 장애인인권소위원회 간사(현)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안전기준과 근무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법률홍닥터

선정 대상 판결 및 선정 기준, 선정 과정



선정 대상 판결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의 선정 대상 판결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선고된 판결로, 장애인이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장애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진 판결을 모두 선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분야별로는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가사소송은 제외하였고 심급의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판결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형사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이름을 알아야 판결문 열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열람 대상 판결이라는 이유로 판결문 제공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정 기준, 선정 과정

2016. 4. 29. 선정위원회는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선정위원들은 위원장을 선출하고 2015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선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선정된 판결의 내용과 그 의미가 잘 정리되어 발표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던 반면, 내용이 다소 어려웠고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갖은 노력을 기울인 활동가들과 여러 단체의 노력이 너무 드러나지 않아 아쉬웠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에는 선정된 판결 중 해당 소송이나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여한 단체나 소송 대리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는 사건의 자세한 배경과 다양한 활동, 의견과 소감을 선정 자료집에 함께 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①판결의 영향력, ②장애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③장애에 대한 이해, ④장애에 대한 관점 ⑤참신성, 발전성 ⑥구체적 타당성의 총 6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집된 판결문은 총 720개로 장애인이 소송의 당사자일 뿐 장애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가 없는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이 우선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총 411개의 판결이 검토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8월과 9월에 2차례 선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선정 보고회 일정이 10월 말로 정해지면서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내내 판결문을 읽고 평가하는 고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위원들은 검토 대상 판결을 읽고 하나하나 평가하여 1차 선정 후보 판결을 결정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2차 선정 후보 판결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선정 후보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마친 후 최종 선정 회의를 통하여 마침내 디딤돌 판결 8건, 걸림돌 판결 8건, 주목할 판결 2건으로 총 18개의 판결이 선정되었습니다.

‘주목할 판결’은 2015년 선정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선정 항목입니다. 작년에도 잠깐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2016년에는 하나의 판결에 대하여 디딤돌 판결이라는 의견과 걸림돌 판결이라는 의견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는 판결이 많았습니다. 판결의 어떤 면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앞으로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도 해당 판결을 ‘디딤돌’, 혹은 ‘걸림돌’로 나눌 수 없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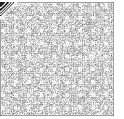
주목할 판결은 그 이름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아야 할 판결입니다. 선정위원들은 의당 주목할 판결들의 결론이 디딤돌로 평가될지, 걸림돌로 평가될지 계속 주시할 예정입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 역시도 함께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판결은
 총 8개 판결입니다.

디딤돌 판결

- 1 지적장애인이란 이유로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279 판결 |
- 2 조울증 치료를 받아 악물을 복용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3나61901 판결 |
- 3 정신질환자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도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아닌 자가 동의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4다205584 판결 |
- 4 요양원 입소계약서의 면책조항은 면책약관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시 명시·설명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2515 판결 |
- 5 장애인차량 LPG 할인지원 중단 후 관계기관의 협조가 미흡하여 계속 지급받은 할인지원금은 부당이득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
 | 대법원 2015다219733 판결 |
- 6 재판정 유예 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등록을 전산 삭제한 행위를 위법한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으로 본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479 판결 |
- 7 아동학대,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7년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2012헌마030 결정 |
- 8 광주 인화학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교사직 사퇴를 요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광주고등법원 2015나10096 판결 |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279 판결 손해배상(기) |

사실관계

원고 A(지적장애 2급)와 원고 B(지적장애 1급)는 미성년자로서 에버랜드의 연간회원이다. A와 B는 2014년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부모와 함께 '우주 전투기'라는 놀이기구를 탑승하려고 하였는데 그 직원이 A와 B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당시 에버랜드의 안전가이드북에서는 해당 놀이기구에 대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²⁾.

과거에 수년간 이 놀이기구를 탑승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거부당한 A, B 및 그 부모들은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500만원의 손해배상과 안전가이드북의 수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우선 피고의 탑승 거부 행위가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본 책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는데 ①안전을 위한 조치 ②현실적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③안전성검사 결과 등에 따른 행위라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다만 손해배상 액수는 A와 B의 경우 각 300만원, A와 B의 부모들의 경우 각 100만원으로 정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에게 60일 이내에 안전가이드북의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하도록 명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가이드북의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들에게 하루에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²⁾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 이후 이 문구를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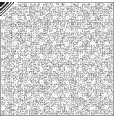
지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지적장애인은 과성을 지르거나 통제가 안 되는 등 과잉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지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타면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놀이기구 탑승제한은 지적장애인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이 사건에서 피고의 생각도 그러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뒤집어 보면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제한이 차별에 해당함을 바로 알 수 있다. 모든 지적장애인이 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부분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빼면 비장애인과 비슷한 사람들이다. 이례적인 사례를 가정해 통상적인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 판결은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적장애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의 탑승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장애인 차별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차별의 근거가 된 안전가이드북 문구가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힌 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간접강제를 인정한 점도 환영할 만하다. 또한 위자료를 많이 인정하지 않는 법원이, 먹고 사는 것과 관련 없어서 경시되기 쉬운 문화향유와 관련한 문제에서 적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다만, 안전가이드북의 문구가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도록 수정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탑승 제한의 필요성은 탑승자의 변하지 않는 특성이 아니라 탑승 당시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지적장애인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일상에서 마주치면 지적장애인인 줄 알아채지 못하고 어리숙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음에도 말이다. 이 판결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정의견

• 김재왕



이 사건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직접 수행한 장영재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를 떠난다는 소식을 들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계속 남았습니다.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진행하고 계신 공익소송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얼마 전이었다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상근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장영재입니다.' 라고 했을 텐데 현재 퇴사를 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지라 '4년차 변호사 장영재(한양대 로스쿨 2기)입니다.'라고 해야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위탁하여 장애인권익옹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와 제가 소송까지 가져가는 사례는 그다지 많진 않은데요, 진행 중인 공익소송으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 거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물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이 있습니다. 이 중 '버스 승차 거부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마치고 원고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소송상대방인 버스회사의 버스가 그 문제로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재차 승차거부를 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승소하고 싶은 사건이고요, 나중에 이 재판의 결과가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인권센터가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협의하여 진행 중인 사건으로는 '경기도 2층 저상버스 내 장애인석 규격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이 있습니다.

Q.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요?

A. 피해자들은 두 가족인데요, 피해아동 A(당시 15세)의 가족은 2014. 6.경. 놀이공원을 방문하여 우주 전투기 놀이기구에 탑승하여 운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원이 다가와 A가 지적 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하차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그 가족은 놀이기구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모습에 창피를 느껴 놀이기구에서 내려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A의 부모님이 인권센터에 위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

발 방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 중에 있었는데 두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피해아동 B(당시 12세)의 가족은 8월경 같은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대기줄에 서 있었는데, 에버랜드 소속 직원이 B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수차례 우주전투기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부모의 말에도 불구하고 탑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아동 B의 부모님도 인권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거부가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 법률위원인 김재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시작하였고, 이후 제가 공동대리인으로 재판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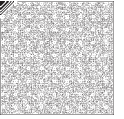
Q.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언론보도도 꽤 많이 되었지요?

A.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김재왕 변호사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매 기일마다 법정에서 와서 취재를 한 후 보도해주신 기자님이 계셨는데 그것이 소송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초기부터 일률적인 탑승거부는 차별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재판부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탑승을 허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탑승을 허용했을 때 피고 놀이공원이 면책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위하여 면책방안을 찾기 위해 2~3차례 기일이 속행되기도 했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재판부에서 조정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논의 끝에 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정하지 않고 판결을 받은 게 잘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Q. 소송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혹은 인상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A. 사건 외적인 부분이지만, 가장 인상에 남았던 점은 김재왕 변호사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장애를 갖고 있긴 하지만, 협업을 하면서 저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인식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재왕



변호사님은 서면을 읽거나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큰 착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여러모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Q.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혹시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A. 재판결과를 보고, 원고 당사자들이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비장애인의 관점에서는 큰 것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차별을 당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 매우 커다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의 억울함이 해소된 점이 가장 의미 있는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판사님이 사회가 변화하는데 기여한 판결이라고 평하시는 것을 보고, 새삼 사회적 의미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적극적 조치를 명한 역사상 3번째 판결인데, 앞선 두 건의 판결과 달리 피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개선효과는 확실히 있었던 조치명령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적극적 조치명령의 문구와 관련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안전가이드북 기재 문구와 관련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고 장애유형을 특정함으로써 일반 이용객들로 하여금 마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해당 문구의 삭제를 원한 원고 측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 부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탑승 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여 수정만을 명하였는데, 이렇게 수정을 하면 정신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조장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항소할 것인지도 논의하였는데,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잘한 것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Q.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놀이공원에서의 탑승거부 문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A. 장애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주 전투기 놀이기구는 지상에서 5미터 이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렇고, 피고 측도 그렇고, 발달장애인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나는 우려를 계속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더라도 소파와 같이 낮은 곳에서는 장난삼아 뛰어내리면서,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는 내려달라고 울음을 터트리지 함부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공포를 알고, 지금 있는 곳이 뛰어내려도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이 5미터 이상 공중으로 올라가는 우주 전투기 놀이기구에서 뛰어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글썽요,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보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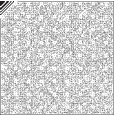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모두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Q. 어떤 곳에서 일하게 되시더라도 장애인인에 대한 관심과 열정, 계속 가져주시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A. 네, 감사합니다.



에버랜드 우주 전투기



조울증 치료를 받아 약물을 복용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3나61901 판결 차별구제청구 등 |

사실관계

원고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2003년에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관해 사태를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정신과 면담과 약물 처방을 받고 있으며 2008년부터 수필 작가 겸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원고는 2009년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 상품 가입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신경계통 약물을 복용하면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 상품은 장애율이 50~80%로 진단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상품으로 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원고는 피고의 내부 보험인수 기준상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적극적 구제조치로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험청약유인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것,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청약서 양식을 교부할 것과 동시에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요구되는 정신장애 보유자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납입면제 상품의 인수가 일률적으로 거절된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행위를 장애인 차별행위로 보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구제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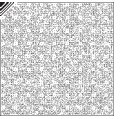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문제가 된 보험 상품이 판매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적극적 구제조치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인정하였는데 손해배상액은 1심과 달리 500만원으로 정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보험 가입을 하고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청약유인행위(일상생활에서 하는 보험가입문의에 응대하는 것)를 하도록 요구할 때 보험가입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의 차별행위를 한 것이 된다. 이 차별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보험인수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보험인수가 과도한 부담이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보험인수 거절이 보험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여야 하며, 그것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보험회사의 직원은 조울증 환자의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할증부담 하에 인수하도록 하는 내부기준을 들어 보험인수를 거절하였다. 하지만 원고의 내부기준이 차별행위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원고와 유사한 조울증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성 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둘째, 원고의 개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위한 보험인수가 피고에게 특별히 더 높은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판결에서는 조울증 환자에 대한 보험인수 위험성이 평균보다 높다는 피고의 주장은 외국 보험사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조울증 환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점(피고가 그 자료마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원고 개인의 재발 가능성, 위험성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감정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경우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 점 등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은 정신장애 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나아가 개별적 위험성 판단 없이 보험인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준 판결로 평가된다. 향후 장애인 대상 보험인수에 있어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우리나라 장애인의 유형별 위험성만이 아니라 개인별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의견

제철영



본 사건의 대리인으로 무려 7년간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지평의 최정규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 과정 등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님과 함께 이 소송을 대리하시면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입니다. 10년차이고, 주로 지식재산권과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소명의식이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주변의 좋은 분들 소개로 우연치 않게 의미 있는 소송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로 정보인권 분야의 소송에 참여하였고, 장애인권과 관련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Q. 지평에서는 두루라는 별도의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지요?

A. 두루는 지평이 후원해서 설립된 공익사단법인입니다. 상근변호사 네 분이 계시구요. 지평 변호사들과 협업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NGO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공익소송을 진행하거나, 공익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법률전문성에 바탕을 둔 공익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Q. 원래 지식재산권과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전문분야로 활동하고 계신다면 장애인인권과 관련된 이 사건은 다소 낯선 분야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소송을 대리하게 되셨습니까?

A. 임성택 변호사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분들을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같이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도 부족했고 공부도 덜 되어 있어서 이참에 좀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Q. 소송이 굉장히 오래 진행되었는데, 진행 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진행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준 사람들이나 단체가 있었나요?

A. 소장은 2010년 7월경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까지 7년 정도 걸린 셈인데, 이렇게 오래 진행될 거라고 예상치는 못했습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 진행하려던 지적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이 예상 외로 너무 빨리 진행되고 항소심까지 패소판결을 받은 상황이라서 초기에는 유리한 국면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장애정도와 보험사고율에 관한 사실조회결과가 의미 있게 나와 변론 기회는 충분히 보장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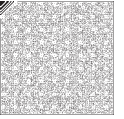
저희 목표는 위자료가 아니라 적극적 구제조치청구의 인용이었는데요. 보험가입거절이 장애로 인한 차별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었는데, 적극적 구제조치가 우리 소송법상 워낙 생경한 제도라서 재판부도 이게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주문을 내야 하는지 고민이 깊었고, 이 부분 법리검토를 위해 1년 정도 변론을 연기(추후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사자간 임의조정도 많이 시도하셨구요. 전문심리위원을 통한 심리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어서 원고도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담당자들이 정서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셔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품은 판매중단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요, 혹시 원고는 소송 이후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였습니까?

A. 제가 알기로 이번 일로 지지셔서 다른 회사 보험 가입을 시도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험가입이 거절되었던 상담과정이 내내 불편한 기억으로 남아 있으셨습니다.

Q.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특히 어려웠던 점이나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A. 아무래도 적극적 구제조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 당시 입법 자료나 논문 등을 찾아보았는데, 예상 외로 자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게 과연 현행 소송법질서에 맞는 제도인지부터 의문을 가지고 있었구요. 저희는 사법부의 적극적 법해석과 선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부분에



정신질환자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도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아닌 자가 동의하여 입원시키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4다205584 판결 손해배상(기) |

사실관계

원고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신문을 거친 후 동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지정받아 안성시에 소재한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하였다. 하나원장은 원고가 하나원에 입소한 다음날 A 정신병원에 원고의 입원을 의뢰하고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에 동의하여 원고는 강제입원되었고, 원고는 퇴원 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원심 법원은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원 2013. 12. 6. 선고 2013나20647 판결)에서, 하나원장은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하나원장이 보호의무자로서 원고의 입원에 동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입원 당시 심리나 행동장애의 정도가 다른 교육생에게 위해가 될 정도로 급박한 위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응급입원이 허용되는 기간에 한하여 원고를 입원 조치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므로 긴급피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법은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원고와 같이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이 보호의무자가 된다는 점,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들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 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정이 원고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하나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전부 기각하였다.

정신보건법 제21조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후견인을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규정한 후 이들 중 2인이 동의하고(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으로 가능) 정신건강의학전문직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동의 없이 폐쇄된 정신병동에 입원시킬 수 있게 한다(동법 제24조).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킬 때도 마찬가지이다.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만 있다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을 폐쇄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 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였지만, 위 요건 충족으로 정신병원 등에 입원 또는 입소되어 자유를 박탈당해 왔던 사람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법률적 이슈로 남을 것이다. 그 와중에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비자의입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앞으로는 이런 무지막지한 법률로써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경종을 울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의 요건을 엄격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선정의견

• 제철웅



요양원 입소계약서의 면책조항은 면책약관에 해당하므로 계약 당시 명시·설명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2515 판결 손해배상(기) |

사실관계

망인은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망인의 형은 망인을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시켰다. 망인은 2012년 혼자 침상에서 내려와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다녀오려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망인은 또다시 침상 아래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은 요양원 및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계약서에는 입소자가 간병사의 도움 없이 무단 활동 중 넘어질 경우 요양원 측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법원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평소 망인에게 낙상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사고 위험이 예견되에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낙상 사고를 당한 이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입소계약서의 내용은 면책약관의 일종으로 입소계약의 중요한 사항인데, 계약 당시 그 내용을 충분히 명시·설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입소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안은 요양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면책조항만으로 망인에 대한 요양상의 주의의무 등이 면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에게 망인의 어머니에게 3,500만원을, 나머지 망인의 형제자매들에게 각 4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사고공화국'으로 비유될 만큼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산재사고 발생건수,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OECD 회원국 중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는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사고만 있고 책임은 없는 사고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신문기사의 제목처럼, 장애인이용시설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피해자인 장애인에게만 돌리려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 그런데 시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책임회피식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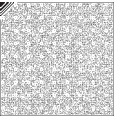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장애인이용시설 등의 이용계약서에 있다. 이용계약서에는 대부분 사고발생시 시설측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시설이용자와 보호자는 이러한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이용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된다.

이 판결은 이용계약서에 규정한 면책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설 측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³⁾.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3. 1. 6.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은 제정되어 보급되어 있는데, 아직 장애인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루빨리 이에 관한 표준약관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고, 새롭게 마련될 표준약관에는 '시설 측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⁴⁾.

3) 다만, 이 판결에서는 입소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면책조항을 시설이용자에게 충분히 명시·설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면책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중 시설급여용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 제2호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선정의견

• 최 정 규



장애인차량 LPG 할인지원 중단 후 관계기관의 협조가 미흡하여 계속 지급받은 할인지원금은 부당이득금이 아니라고 한 사례

| 대법원 2015다219733 판결 부당이득금 |

사실관계

원고 대한민국은 장애인들에게 승용차용 LPG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자 이 세금인상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방식은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보호자카드)로 장애인 승용차에 LPG를 충전하면 신용카드 회사가 복지카드(보호자카드) 사용자에게 세금인상전 대금만을 청구하고 차액을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형태였다.

피고는 지체장애 6급 장애인으로 본인 명의의 장애인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받아 왔는데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4급~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신용카드 회사,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7년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피고 역시 지원을 받았고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원심은 피고가 받은 지원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법률상원인을 결한 재산상 이득에 대하여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이득제도의 본질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지원이 이루어진 경위와 지원 액수를 종합하여 볼 때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바 법률상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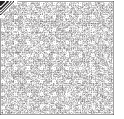
이정민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을 위하여 판결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부당이득금 사건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국가(보건복지부)가 복지급여와 관련하여 피고인 장애인들에게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금액 역시 소액이 많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약 6개월에 걸쳐 LPG 세금인상분에 대하여 할인지원을 받은 금액 역시 158,640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4~6급 장애인들 중 피고와 같은 경위로 2007. 1. 1. 이후 할인지원을 받은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고, 이들 모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별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고, 재판부별로도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8793 사건에서는 지체장애 4급의 피고가 제공받은 할인지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같은 법원의 2015나11846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기도 하였다.

이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동일한 내용의 대법원 2015다218068 판결에서는 비록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없고, 같은 쟁점을 가진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계속 중이며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실체법의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이 판결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특히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가 받은 할인지원이 장애인 복지 및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공평의 이념에 기초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 복지급여 정책의 축소를 둘러싼 유사 사건에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재판정 유예 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등록을 전산 삭제한 행위를 위법한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으로 본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479 판결 정신장애취소처분취소 |

사실관계

피고 지자체는 2008년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 2011년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정밀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의 장애를 '장애등급 결정보류'로 정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심사 결과를 원고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2013. 5. 원고에게 '장애등급 결정보류 처분'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 5.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7. 10.경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보류' 처분을 유지한다고 통보하였고 7. 15.경 장애인 관리 프로그램인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피고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이 없거나 장애인 등록 취소는 장애등급 결정보류 처분에 뒤따른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3. 7. 15. 등록 취소 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본안 판단에 있어 먼저 법원은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통지가 없었던 만큼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분이 무효임을 판시하였다. 그리고 장애등급 재판정 유예 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피고의 등록 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는 바, 이 사건 등록 취소처분은 위법하며 무효인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구청장)는 피고의 전산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는 전산처리를 하였지만, 외부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그런데 원고의 장애인 등록이 전산에서 취소됨으로써, 원고는 장애수당이나 의료비 등 장애인복지법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복지 조치를 못 받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얻게 되는데, 장애인 등록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재판부는 전산 처리 후 피고 직원들이 여러 차례 원고에게 '수급 자격과 급여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한 말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아,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이 외부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장애인 등록취소 전산 처리를 하면서도 취소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등록된 장애인으로서의 지위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하여, 해당 규정이 장애인등록취소의 근거규정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더 나아가 위 법문언의 규정을 근거로 등록된 장애인의 지위를 박탈하면서, 단순히 전산 상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장애인 등록 관련 업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행정편의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을 주는 판결이다.

선정의견

이 용 재



아동학대,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자가 7년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2012헌마1030 결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0년부터 전주시 완산구 사회복지시설에서 재활복지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12. 1. 26.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은 그 시행일 이후 위 사회복지시설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조문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먼저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선고형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으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및 이용자들의 인권보호라는 공익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신뢰보호이익과 관련하여서도 국가나 법령이 특별한 신뢰이익을 부여한 객관적 사정이 없고 종사자의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선정의견

● 김용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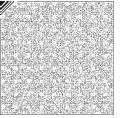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입법자가 이러한 생래적인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직업 선택의 문제는 자아실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자격 외의 다른 이유로 선택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받아들일만한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⁵⁾한 것은 역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심판대상조항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분명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제한 기간을 7년으로 하고 있어서 제한의 정도 역시 작지 않다. 위 조문으로 인하여 종사자로서 직업 수행 과정에 오점을 남겼던 자들은 오랜 기간 종사자로 다시 일할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제한의 이유와 정도가 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단호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복지국가가 확대되면서 보다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 사회적인 책임과 준법의식을 지녀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 배제시켜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어 사회복지사업 전반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시설 이용자들의 인권 보호가 어려워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월등하게 중대한 공익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본 결정은 여러 가지 헌법적인 논리와 판단 기준들로 심판대상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의 중요성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및 책임의 중요성 등을 무겁게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기에 본 선정위원회가 올해의 디딤돌판결로 선정하였다.

5)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결정



광주 인화학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교사직 사퇴를 요구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광주고등법원 2015나10096 판결 인격권침해금지 등 |

사실관계

원고는 1987. 9.부터 2008. 2.까지 광주 인화학교의 교사로 근무했고, 이후 다른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인화학교 재직 중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1년에 수사를 받았으나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되었다.

인화학교 총동문회는 2014. 3. 과거 인화학교에서 성추행을 한 교사는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했으며, 이후 11월까지 기자회견, 1인 시위, 인쇄물 게시, 팸말과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화학교 총동문회 및 그 대표적인 활동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성추행 교사의 퇴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각종 활동의 금지를 법원에 청구하였고 피고의 무변론으로 원고는 1심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2014. 12. 피고는 항소하였고 원고는 소송 계속중인 2015. 2. 근무하던 학교에서 명예퇴직하고 손해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였다.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특수학교 교사직의 사직을 요구한 일련의 행동이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면서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의 표현이 인격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의적인 모욕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이 왜곡되는 정도의 과장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들의 행위를 교직에서 강제로 퇴직시키려고 한 위법한 강요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선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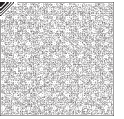
• 유재규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인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 발견의 수단이고,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헌법 제37조 제2항). 우리나라는 실제 일어났던 사실을 표현하더라도, 그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되, 다만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면책을 하고 있다.

우리 법이 보호하는 명예란 외적 명예, 즉 어떤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므로, 누군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를 사회에 고발하려 할 경우 또는 해당 당사자를 돕는 활동가들의 경우 그 표현 수위에 따라 상시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물론 기존 판례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고, 행위자의 주요 동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고발이 분쟁의 불씨가 된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이와 같은 우리 법체계가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려는 활동가를 위축시킬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판결에서도 원고는 명예훼손과 함께 포괄적으로 인격권 침해에 기한 불법행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공익적 목적에 의한 표현의 경우 해당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다 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선례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6)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결정 등
7)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인화학교 사건의 해결과 피해자의 회복,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실로암사람들의 김용목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장애인단체인 (사)실로암사람들 대표로 있으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남구푸른길춧불모임 등에서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목이라고 합니다.

Q. 2015년 걸림돌 판결로 인화학교 사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판결 선정 과정에서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A. 당시 인화학교에 근무 중이던 성추행 혐의자(이 사건 판결의 원고임)는 1997. 6.~7.경 교사라는 직위를 활용하여 재학 중이던 피해자(여 13세, 초등학교 2학년)에게 강제로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를 목격한 동급생(남 초등학교 2학년)을 소주가 들어있는 페트병으로 내리치는 행위 등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도가니사건 재조사 때 피해자의 진정에 의하여 접수되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성추행과 관련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나 이를 토대로 추궁한 결과 피의자는 범죄를 일부 시인하였으나,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교사의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나 사건 발생 시점이 1997년도이며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성추행 혐의자는 2015년 2월 28일경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Q. 이 판결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들을 하셨고, 하시고 계십니까?

A. 인화학교총동문회는 2014년 3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경력이 있는 특수교사 퇴출”을 요구하고 2014년 6월 9일부터 11월까지 광주시교육청 앞과 이 교사가 재직 중이던 학교 정문에서 일인시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5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소

속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및 특수학교 학부모회가 교육감 면담을 시작하며 성추행 혐의자 교단 퇴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일인시위,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의 교단 퇴출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성추행 혐의자는 사과 없이 지속적으로 교사 생활을 영위하였고, 대책위 기자회견장에 성추행 혐의자의 가족들이 난입하여 분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8월 26일에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와 48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투쟁에 결합하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퇴출 운동의 수위를 높이고 성추행 교사의 실질적 교단 퇴출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성추행·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4개 특수학교 학부모회의 결정에 따라 등교 거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등교거부 투쟁은 1달 반 정도 지속이 되었고 천막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등을 이어 나갔습니다.

Q. 활동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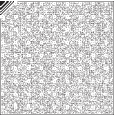
A. 어렵다기보다 가장 분개하였던 일은 성추행 혐의자의 태도였습니다. 성추행 혐의자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들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와 인화학교 총동문회 활동을 부인하며 자신이 속한 학교 교사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작정 버티기, 무죄 주장, 가족들을 동원한 반대, 피해자의 선배들의 모임인 인화학교 총동문회에 대한 소송 등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참가자 개인과 단체들은 아연실색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야외에서 진행된 등교거부 투쟁은 어린 학생들의 건강문제, 수준 높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종 교재의 준비라던가, 교사 선발, 급식 제공 등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Q. 이 판결은 항소심 판결인데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어떠셨는지요?

A. 성추행혐의자에 대한 검찰의 의견은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나 공소시효 도과로 죄를 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고 그런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심정과 주장, 인화학교 총동문회의 주장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를 들어 명예와 신용 등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성추행 혐의자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의 태도와 성추행 혐의자의 태도 등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이 응당 상식적으로 진행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학부모, 인화학교 총동문회,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당혹감 앞에 몸을 떨어야 했으나 이후 곧바로 성추행 혐의자 교단 퇴출 운동에 더욱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Q.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2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피고나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27일 2심 재판부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마침내 소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가니 사건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에서 세워 당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2차 피해를 가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Q. 기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A. 도가니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지금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조사로 확인된 숫자만 해도 30명이고, 2011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15명에 달합니다. 지금도 정신병원을 전전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대책위의 조직적인 활동은 조만간 끝나겠지만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 역시도 상당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Q.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던 사건도 초기의 관심이 식으면 사건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가니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참으로 아프게 다가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대책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활동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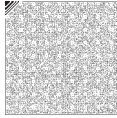
인화학교 성추행 교사 교단 퇴출 기자회견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걸림돌 판결로 선정된 판결은 총 8개 판결입니다.

걸림돌 판결

- 1 지적장애 아동 성매수자를 상대로 성매수의 위법성을 내세워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8013 |
- 2 피해자들의 손이나 발을 결박한 행위는 감금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여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일 뿐 별도로 중감금죄의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구고등법원 2014노755 판결 |
- 3 외부 출입문을 시정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37 판결 |
- 4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가합225 판결 |
- 5 기숙사생활을 하던 지적장애인이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 학교법인의 관리 소홀 책임을 부정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5685 판결 |
- 6 누범기간에 동거하는 뇌병변장애 6급 여성을 폭행, 협박, 강간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한 사례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합53 판결 |
- 7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후 원고인 지적장애인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사건에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5399 판결 |
- 8 아버지가 지적장애 1급 아들을 망치로 가격하여 살해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111 판결 |



지적장애 아동 성매수자를 상대로 성매수의 위법성을 내세워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8013 판결 손해배상(기) |

사실관계

원고 A는 만14세로 지능이 약 70 정도 되는 경계성 장애를 가진 지적장애청소년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당시 만 13세였던 원고 A가 집을 나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자로 A를 모텔에서 숙박시켜주는 대가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767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장애인인 A를 간음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를 강요하여 청소년인 A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A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약 4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유사성교에 의한 성매매로 기소된 형사판결이 확정된 만큼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가 유사성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⁸⁾의 처벌 규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자에 대하여 피해자로 평가되거나, 어떤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대상아동·청소년'은 성범죄의 피해자인 '피해아동·청소년'과 구별되므로 성을 매수한 상대방의 행위는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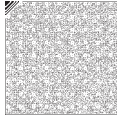
선정의견

이정민

국민의 법감정과 그 결과가 달라 여론의 질타를 받는 판결이 법리적으로 꼭 비판받을 판결은 아닌 경우가 많다. 법률의 규정이 그러하거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관들 역시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관련된 형사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경직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취지와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의 보호법의 역시 몰각시켰다.

판결문에도 나타나듯이 원고는 경계성 지적장애를 가진 것 만 13세가 된 청소년이었고,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이 부진하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인지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서 지적장애 소녀가 갖는 어려움과 사건의 전반적인 발생 경위, 원고의 피해 정도, 사건 이후 원고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원고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었다거나, 자발적 성매매에 나섰다라고 보기는 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원고의 행위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성매수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었던 것인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이 사건은 같은 법원에서 불과 3주 전쯤에 먼저 선고된 원고의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02001 사건)과도 그 결론을 달리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는 이 소송에서도 청소년 성매수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남성을 상대로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해당 재판부는 피고의 범죄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배진수 변호사를 만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진수 변호사입니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공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서울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센터입니다. 여기서 저는 대시민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 법·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Q. 이 사건은 어떻게 관여하게 된 것인가요?

A. 작년 3월 십대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와 성매매를 예방하고 피해구제 활동을 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풀뿌리단체 법률지원 사업’을 위해서였는데, 이 때 처음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당시는 가해자들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였습니다. 이때 일부 가해자들은 아동·청소년성매매로 기소되었고, 일부 가해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총 6명의 가해자들은 거주지가 서울, 인천, 전주 등 각기 달라서 이를 한데 모아서 법적대응을 해줄 전문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공익법센터는 아동·장애·여성의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수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 피해자가 돌아온 2014. 6.경 피해자의 어머니는 6명의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하였고, 저는 2015. 3. 소송단계에서부터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은 크게 형사와 민사, 두 측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변하는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피

고인들의 행위가 장애아동에 대한 간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형사소송에서 가해자들은 성매매만이 인정되어 약 400~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치게 됩니다(유사전과가 있었던 1인 제외).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이 확정된 가해자들에게는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상 장애아동에 대한 간음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고, 또 어떻게든 원고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외에도 아직도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Q. 이 사건이 크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여러 민사사건이 진행되던 중 가해자 1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된 이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에 바로 항소를 결정하면서 판결의 부당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보도 여부를 두고는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자칫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고, 진행 중인 소송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아동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매매의 자발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 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심각한 범죄인 성매매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하여 같은 법원에서 또 다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서로 판결이 엇갈린 점 등이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였습니다.

Q. 본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가출하여 잠잘 곳, 먹을 것이 없는 궁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



계를 맺은 것은 장애아동을 약취·유인하고 간음한 심각한 범죄임에도 그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설령 앞서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성매매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했다손 치더라도, 1심 재판부는 아동성매매라는 범죄행위는 사회적 성풍속을 어지럽힌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이긴 하나 성매수 상대방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의 성매수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자발적인 성매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의 미성숙함, 판단능력 부족을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적, 법률적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유독 성적 자기결정권만큼은 미성년자, 심지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에게도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대개 보이지 않는 위계나 위력, 경제적 궁핍함, 정서적 결핍, 미숙한 판단능력, 호기심에 의한 충동 등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이며 단지 폭력과 협박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동의는 동의로 인정하지 않거나 성인과의 연령차이가 일정 정도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등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더욱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겨우 13세를 2개월 지난 어린아이에 불과하였고 경계성 지적장애로 성인과 같은 수준의 판단능력이나 동의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지적장애, 아동인권, 여성에 대한 성착취 구조 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A. 지난 9월 말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솔직히 정말 모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점을 알고 있는 만큼,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만큼 법리적으로 많은 고심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 13세 소년과 성인 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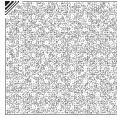
의 성관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학대를 당하였다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불법행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항소심 재판부에서 숙고해주기를 바랍니다.

Q.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A. 미성년자는 성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기 어려운데도 13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등, 미성년자의 성이 보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청소년보호법만으로도 청소년의 성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그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그것이 동의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강력한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라는 점, 미성년자는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도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장애아동이며 가해자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간음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면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는 억울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항소심 제기 당시 개최된 규탄 기자회견



피해자들의 손이나 발을 결박한 행위는 감금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여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일 뿐 별도로 중감금죄의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구고등법원 2014노755 판결 상습중감금 등 9)

사실관계

이 사건은 구미 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벌어진 학대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피고인들은 시설장, 사무국장, 부장, 간호사, 생활재활교사 등 시설 종사자 20명이다.

해당 시설에서는 지적장애인인 이용자들의 돌발행동이 있을 경우 생활재활교사들이 이를 보고하고, 시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손과 발을 묶어 방에 감금하였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채 설탕물만 먹이기도 하였고, 이용자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설장은 이용자들의 주·부식비, 구미시로부터 받은 시설의 위탁 운영비, 이용자의 개인 통장에 든 금원 등을 횡령하였고, 이를 무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1심 법원은 2013년 당시 시설장(A)을 징역 7년에, 당시 사무국장(B) 및 부장(D)을 징역 3년에, 2014년 현재 사무국장(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나머지 종사자들에 대하여 징역 1년 내지 징역 6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했다.

본 판결은 이 사건의 항소심으로 항소심법원은 A에게 징역 3년, B와 D는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C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항소한 피고인 전원의 형을 감하거나 선고유예 혹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중감금 대신 감금죄의 성립만을 인정하였고 상당수 종사자들의 감금행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습중감금(일부 인정된 죄명 상습감금), 업무상횡령, 사기, 장애인 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범인도피교사

선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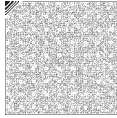
이 용 재

걸림돌 2번 및 3번 판결은 모두 감금죄에 관한 판결로 걸림돌 2번 판결은 중감금죄의 성립이, 걸림돌 3번 판결에서는 감금죄의 성립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손과 발을 묶어 결박한 뒤 3박 4일 동안 기저귀를 채워 대소변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설탕물을 제공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중감금죄를 인정 하였다. 반면에 재판부는 손과 발을 묶어 결박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감금의 수단인 폭행·협박이나 감금을 계속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될 뿐 가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감금죄를 부정하고 감금죄만 인정하였다.

감금죄는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행동자유의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하도록 해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반면에 손과 발을 묶어 조금의 행동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은 단순한 감금죄를 넘어 가혹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이 감금죄에서 가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 감금죄의 수단이 유형력 행사의 결과 단순히 특정 장소를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된 것을 넘어서 침대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하거나 손과 발이 결박되어 움직이려면 기어 야 할 정도에 이르렀고 그 결과 대소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인간의 존엄성을 심대하게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실사 폭행·협박이 감금의 수단이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자체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1심 판결은 위 범죄사실들도 모두 중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판결은 다른 입소 장애인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돌발행동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로 중감금죄를 부정하고 감금죄만 인정하였다.



구미 솔 장애인생활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한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김종한 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A.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과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지·지원하고,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 및 권리옹호 활동, 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지역 장애인현안에 대응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Q. 해당 사건은 어떻게 접하게 되었습니까?

A. 지역 일간지를 통해서 최초로 접했습니다. 2014. 8. 1. '구미판 도가니'라는 타이틀로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거든요.(아이러니 한 것은 현재 거주인 인권침해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광역시립희망원 사태에 대해 '생활인이 자유로운 시설'이라고 한 매일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냈다는 겁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거주인 감금 등 가혹행위와 보조금 횡령 혐의로 솔재단 관계자 6명을 구속기소한 사실과 그 사유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사건을 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2014년 상반기에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가 시행된 것을 인지하고 조사내용과 피해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Q. 사건의 지원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정되었지요?

A.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동대응을 제안했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1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1개 전국단체가 모여 2014. 8. 12., 구미 시청 앞에서 '구미판 도가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솔 복지재단 산하 시설의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구미시와 경상북도에 ▲시설폐쇄 명령 및 탈시설 대책 수립 ▲관계자 처벌과 횡령 건에 대한 공무원 연루 수사 촉구 ▲법인설립 허가 취소 ▲도내 전체 시설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대응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구미시와 경상북도 관계부서와의 면담, 구미지역 시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가해자 재판 방청 등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상북도의 시설수용 중심 장애인복지를 구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시설현안에 대한 상시대응기구인 '경북지역 시설비리·인권침해 척결 탈시설·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경북탈시설공대위,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의 전신)가 2014. 10. 6.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북탈시설공대위에는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같은 당사자 단위와 장애인 부모단체,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후에는 경상북도의회와 감사관을 쫓아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및 비리문제에 대한 특별감사, 공무원 유착여부 파악을 요구하기도 하고 경상북도에 시설수용 정책이 아닌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체계 수립을 요구하며 기자회견도 하고, 면담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Q. 2심 판결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특히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A. 1심에서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대표이사가 거주인에 대한 감금과 강박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8억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감금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3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형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거주인의 몸을 묶어 강박하고, 방에 감금시켰던 가혹행위, 거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주·부식비와 후원금 등을 횡령한 행위야말로 부당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사사례와 마찬가지로 죄값에 비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요. 특히 여전히 곳곳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시설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또다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여전히 분노하게 됩니다.

Q. 왜 이런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A. 양형에 대한 재판부의 주요한 판단근거 중 하나가 '강박은 다른 거주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행위'라는 건데요. 대표자나 직원이 '거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



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정상참작이 되고, 재판부 역시 인권침해 사안을 엄중히 다루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결과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7년형이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만 보아도 충분히 파악되는 부분이지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장애인을 만날 수 없는, 격리와 수용중심의 장애인복지 시스템 속에서는 장애인은 무능력하고, 보호·관리되어야 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피해자인 거주 장애인들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았다면, 우리 사회가 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만들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결국 시설 인권침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 생각해요. 대규모 시설에 사람을 가두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박탈하면서 집단 관리하는 시스템 속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시설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만 대책이 제시된다면 시설 인권침해와 비리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 될 것이 뻔합니다. 가해자들 역시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될 것이고요. 특히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체계가 열악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단체의 영향력이 강한 경북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Q. 현재 해당 시설은 어떤 상황입니까? 판결 이후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A.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사진 전원이 교체되었고 현재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법인 구성원들이 새로 꾸려졌고 법인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에는 거주 장애인분들과 함께 인권교육을 진행하였고 이후에는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탈시설 대책 수립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구축, 시설 추가 설립 불가 방침을 요구하면서요.

Q. 본 사례를 지원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습니까?

A. 우선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3명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고, 지역 지원체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전원초치되거나 자택으로 귀

가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이 아쉽습니다. 또 가해자 처벌수위가 1심에 비해 낮아진 것도 실망스럽구요. 무엇보다, 여전히 시설문제의 구조적인 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답답합니다. 지역일수록 공무원들이 시설수용 정책을 장애인복지의 전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만나서 설득하고, 요구해도 탈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서 시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전부고요. 또 하나는, 지역 자립생활 지원 기반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겁니다. 경북은 특히 전국에서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체계가 미흡한데, 피해자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도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다른 시설로 전원되거나, 가해자가 추방되는 선에서 사건이 매듭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쉽습니다. 결국 언제 발생할지를 인권침해 요인들을 고스란히 안은 채, 시설은 또다시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Q.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반면 혹시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는지요?

A. 미약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구미지역에서 탈시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경북지역에서는 누구도 이 거대한 시설의 벽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었으니까요. 이를 계기로 경북탈시설공대위가 결성되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까지 출범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Q. 기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A. 구미 솔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 인권침해는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와 개인의 삶을 박탈당한 채 인간답지 못한 삶을 강요받고 있고요. 이름도 모르게 죽어한 사람들의 억울한 원혼이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억울함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몫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정말 탈시설 정책이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그 길에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외부 출입문을 시정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37 판결 유기치사 등 10 |

사실관계

이 판결은 '실로암 연못의 집'이라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형사 2심 판결이다.

피고인은 2001. 9.경~2013. 9. 13.경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고 42명의 장애인들이 이 시설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욕창으로 2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중증 지체 및 정신장애 1급 피해자의 욕창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나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그리고 중증 지체장애인을 전담하여 관리할 생활지도원을 두지 않고 곰팡이가 필 정도로 비위생적으로 시설을 관리하였으며 부실한 식단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총 39명의 이용인들이 외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외부출입문을 시정하여 이용인들을 감금하기도 하였고 기부금품 명목으로 11억원 이상을 모집하여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이용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인연금을 착복하기도 하였으며, 거동이 가능한 이용인들이 빨래, 청소 등 노동을 담당해야 했다. 1심을 담당하던 춘천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에 처하였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였으며 유기 및 감금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용인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만족시킬 수 준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도 생존에 필요한 조치 자체를 방기하여 유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외부 출입문을 시정하였다고 당연히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판단이 그 근거가 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2015. 10. 15. 상고를 기각하였다.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유기치사, 사기, 감금, 유기, 기부금품의모집 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선정의견

이 용 재

이 사건 판결은 출입문(건물 현관문이 아닌 외부에서 정원으로 들어오는 출입문)을 한 달간 잠가서 39명의 입소자들이 외부로 출입할 수 없게 한 감금죄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입소자가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나가 5일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고 나서 정신지체 장애인이 직원 모르게 나가서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출입문을 잠근 것이고, 상당수 입소자들이 외부 출입에 통제를 받지 않거나 직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입소자 39명을 전부 감금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신지체 등의 장애가 있는 입소자의 경우 외부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사고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사고발생에 따른 시설의 책임을 방지하기 위한 면도 있는 반면에, 장애인의 행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이 있다는 점에서, 출입제한을 감금죄로 볼 수 있는지는 긍정설이나 부정설 모두 일정부분 장애인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요청하는 경우 외부출입이 가능했다는 일부 입소자들의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입소자 전원에 대하여 감금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부 입소자들은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하여 외출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입소자 전원에 대하여 감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출을 못하게 한 일부 입소자들에 대하여 감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외출하려 한 시간이나 외출 요구의 유무 등 구체적인 경위나 외출을 하지 못한 시점이 공소사실 기재 일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지적장애인에게 공소사실의 특징을 위한 진술의 구체성이나 범죄사실 증명을 위해 요구되는 진술의 증명력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도를 요구한다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의 보호에 공백을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이 사건 판결에 아쉬움이 있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의 정도가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면 무죄를 선



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외부출입이 제한되었다는 입소자들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지 못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소제기에도 아쉬움이 있다.

이 사건 판결은 1심과 달리 시설에서 총 41명의 입소자들을 보호하면서 전담 생활지도원을 두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시설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식단을 제공하여 그들 전부를 유기하였다는 범죄사실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입소자들 대부분이 수년 이상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없었고, 정신장애가 없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진술이 가능한 입소자들 중 상당수가 수사기관에서 시설이 제공하는 밥과 반찬이 맛있거나 무난하였고, 옷을 입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시설도 대체로 깨끗했다고 진술하였고, 건강검진 결과 대다수의 입소자들이 정상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입소자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생존에 필요한 조치 자체를 방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설폐쇄 당시 3명의 입소자들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1심 판결 사실인정과 같이 관련 규정상 6명의 종사자를 두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종사자가 12명이고 향후 23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라고 신고하면서 불과 3명의 종사자를 두었고, 직원들의 인력충원요구도 거절하였으며, 장애가 경미한 입소자들 중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대로 두면 너무 더럽고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청소, 빨래를 하거나 다른 입소자들의 식사, 목욕을 도와주고 심지어 치료를 도와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했고, 많은 입소자들이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일부 곰팡이가 핀 침구류나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조리한 것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유기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다른 입소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도 인정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 사실을 고려하면, 적어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3명의 입소자에 대해서까지 유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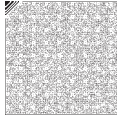
재판부는 검사가 입소자들 전부를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입소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입소자들 3명의 건강이 악화한 경위나 피고인이 위반한 보호 의무의 내용과 일시, 장소를 확인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와 공소제기 자체에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과 별개로 공소 사실과 달리 3명의 입소자에 대한 유기죄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히 어려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위에서 살펴본 일부 입소자들에 대한 감금죄와 달리, 3명의 입소자들에 대한 유기는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유기죄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많은데,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도로 구체적인 경위를 모두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유기죄를 대부분 부정하게 되어 지적장애인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지적)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을 간과한 판결이다.

이 판결과 비교할만한 판결로 아래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합26 판결을 들 수 있다. 이 판결은 디딤돌 후보 판결로 검토되었다.

〈비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감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전고3(병합) 부착명령

이 사건 판결은 4일 동안 지능지수 62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4일 동안 컨테이너에 감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감금기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물을 뜨러 가거나 식당에 가기 위해 컨테이너를 벗어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으로 위축된 상태였으며, 식당주인이 피고인과 아는 사이였고, 비장애인보다 인지능력이나 상황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부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보아 감금죄를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때,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할 때는 비장애인과 다른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인정하였다.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이 드러난 시점부터 재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강원 팀장과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김강원입니다.

Q. 인권센터에서 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도가니' 사건으로 그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설 내 장애인학대, '염전노예' 등 각종 노예사건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학대 등 이곳저곳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장애인학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세간의 관심을 끌 뿐이지 정작 피해자의 삶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과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그나마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원체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했고, 피해자의 완전 자립과 정착을 목표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실로암 연못의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은 2013년 모 방송사의 취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시던 중증장애인이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욕창으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고, 시설장은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수억 원대 카드빚을 졌는데 이 일을 고인의 가족이 방송사에 제보함에 따라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시설은 40여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두어 명의 종사자가 관리했는데 중증장애인과

중환자들이 많아 다른 분들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용자에 대해 제대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 개인위생 관리도 전혀 되고 있지 않았고 시설 내부는 곰팡이가 침구류에까지 가득 피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A. 방송사에서 저희 연구소로 연락해서 시설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요청했고 연구소는 흥천군청과 함께 조사와 분리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후 소송과정을 진행하는 한편 저는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 특정후견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Q. 소송 진행 과정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A. 소송은 참으로 길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가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입증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장애가 중중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으셨기에 피해사실을 증언하기가 어려웠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욕창으로 사망하셨던 분에 대해 유기치사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졌었고, 결국 유기치사가 인정됐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지요. 저는 시설 이용인 전반에 대한 유기죄와 감금죄가 인정될 바랐지만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유기죄와 감금죄가 인정되지 않아 시설 내 참상을 목격했던 저로써는 몹시 허탈했습니다. 2013년 9월경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2년 정도 재판이 진행되었었는데 몇 차례 의견서를 내기도 했고 피해자분들의 현재 개선된 생활상을 촬영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Q. 소송을 진행하면서 특히 인상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인가요?

A. 거의 모든 공판에 참석했었고 공판이 끝날 때마다 담당검사를 만났습니다. 다행이 의지



가 있으신 분이었고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겪은 일들과 장애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과 대화를 나눴던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시설장의 악행을 생생히 목도했기 때문에 엄벌을 받기를 바랐고, 시설 내 학대 사건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1심에서 유기죄와 감금죄 등 고발했던 죄목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을 때 장애인을 학대한 사건에도 이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구나, 법원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의 결과를 들었을 때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멀리 강원도 홍천까지 피해자를 만나러 수없이 다니고 인터뷰 했던 장면들도 기억에 남는군요.

Q. 이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2심 판결은 선고일에 법정에서 직접 선고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재판장이 “자기 집 문을 잠겼다고 감금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돌봄이 소홀했다는 것만으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나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문을 잠겨 감금한 것을 어떻게 자기 집 문을 스스로 잠근 것에 비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유기치사를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던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유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시설의 참상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들이 처한 상황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시설 내 집단적인 학대사건이었기에 한 명 한 명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고려되지 못했고 중증장애인들이 수사하고 재판을 함에 있어 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의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사건치고는 형량이 높게 나온 편이긴 하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법원의 인식과 사법절차 내에서 장애인이 처한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Q. 기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A. 사법절차 내에서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법절차 내에서 장애인을 지원할 시스템이 발전해 있고 사법종사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저는 수사단계이든 재판단계이든 발달장애인이 등장했을 때 사법종사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장애 감수성이나 인권인식도 시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이 특히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취약성이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우리 사법절차도 약자에게 좀 더 가까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Q.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가 빨리 자리를 잡아 많은 학대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감사합니다.



실로암 연못의 집 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가합225 판결 차별구제청구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LH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상주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1급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시점은 2013. 12.경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늘 눈·비를 맞으며 지상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로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의 설치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공동주택에 이동에 용이한 계단이나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된 것은 2012. 8. 24.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및 상당 부분의 시공이 이루어진 것은 그 이전이므로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지상주차장 이용시 눈이나 비를 맞게 되더라도 이는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뿐 원고가 아파트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제18조 제3항)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서도, 피고가 아파트 주출입구 앞에 장애인주차면을 조성하였으므로 피고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원고가 지하주차장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원고는 항소하였고,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판결은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하 이 판결은 아파트의 지상 주차장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접근할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장애인등 편의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은 "정당한 편의"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 않으려면, 장애인이 요청한 편의 제공이 거부되더라도 장애인이 해당 편의제공 외의 다른 방법으로 용이하게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단순히 해당 편의제공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시각에서 용이하고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대체 수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위법성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이 판결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등편의법을 살펴보면, 지상 주차장에 장애인주차면이 각 동 주출입구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다거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지상 주차장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아파트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 가능성은 보장된다고 판시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

선정의견

• 유재규



이 사건의 대리인으로 현재 1심 및 항소심을 대리하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들어보았습니다.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입니다. 공감은 제가 맡고 있는 장애인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단체로 많은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요? 어떤 점에서 선뜻 사건을 맡아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시게 되었습니까?

A.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사건을 의뢰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하로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일반분양아파트에는 당연히 설치되어 있는데, 같이 지어진 임대아파트에는 대부분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인식하여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이 소송의 진행 경과는 어떠했습니까? 특히 어떤 부분이 어려웠습니까?

A. 1심에서 변론기일을 1회 열고 바로 판결선고를 한다고 하여 당황하였는데, 결국 1심 전 부패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Q. 판결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어떤 부분이 부당하고, 아쉽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시공 후 완공까지 얼마든지 설계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더라도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면 되

므로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부분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Q.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떠합니까? 2심에서는 특히 어떤 면을 집중하여 주장하고 계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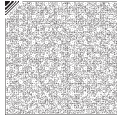
A. 다행히 2심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의식이 있는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현재 조정에 회부되어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조정기일을 1회 진행하였습니다. 2심에선 비장애인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의 상황에 대해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습니다.

Q. 이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이 있으신지요?

A. 장애인 차별 문제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소수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나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기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 장애인 차별문제는 법제도의 개선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인식의 측면이 큼니다. 소송이나 진정, 그 외 사회적 문제제기를 통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숙사생활을 하던 지적장애인이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 학교법인의 관리 소홀 책임을 부정한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5685 판결 손해배상(기) |

사실관계

피고는 대구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망인은 95년생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4. 3.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대학교의 발달장애인 교육센터에 입학하였다. 이 교육센터는 신입생들로 하여금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망인은 2014. 6. 3. 오후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 3층 건물 옥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 망인의 부모 및 누나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방인이 점자도서관 옥상의 철재 배관 위로 올라갔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안전처의 옥상출입문 개방 지침을 볼 때 옥상문을 상시 개방한 것만으로 교육센터 입학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점자도서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의 중간 휴식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추락할 것을 예견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선정의견

이 판결은 지적장애인의 독립생활능력 강화를 위해 기숙사 생활을 시키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이하 '센터')가 옥상 문을 개방하여 관리하였던 것이, 발달장애인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책임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과거 법원은 '수영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 익사한 사건에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관리 방법이므로, 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자로서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도 도모함이 상당하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4045 판결).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병원이 망인의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위 옥상에 존재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면,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위 대법원 2009다101343 판결에서는 옥상의 장소적 환경과 특히 난간 돌출부의 구조·모양과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옥상 이용인 중에서는 호기심이나 그 밖의 충동적 동기로서 이 사건 옥상의 돌출부에 올라가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상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그럼에도 피고 병원이 이러한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그 밖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옥상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피고 병원이 망인의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옥상에 존재한 위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국민안전처의 지침에 따르면 옥상출입문 상시 개방이 불가능하다면 자동개폐장치 설치 또는 비상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인 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상 옥상문을 상시 개방하면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센터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센터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아쉬움이 있다.

선정의견

• 이 용 재



누범기간에 동거하는 뇌병변장애 6급 여성을 폭행, 협박, 강간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한 사례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합5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1)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3. 4.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뇌병변장애 6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휠체어로 생활하는 43세의 여성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처지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보행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리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으며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폭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살인죄 등을 저질러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성행·동기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한편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11년 9월 10일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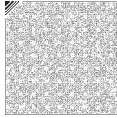
장애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선정하기 위해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결을 많이 보았다. 판결에 따라 어떤 것은 지적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어떤 것은 부인하였다. 또한 어떤 판결은 장애인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았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판결문만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권고형의 하한에 맞춘 형이 선고되었다. 권고형의 상한을 넘거나 상한에 근접한 형이 선고된 경우는 없었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처벌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 더욱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처벌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이런 판결의 경향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만 있는 것인지, 전체 형사 판결에서 모두 그러한 것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는 양적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 중 그 정도가 심한 사례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뇌병변장애 6급 여성을 보행용 지팡이 등으로 마구 때리고 식칼로 위협하고 간음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권고형의 하한인 6년형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이 선고된 사건이다. 피고인이 과거 살인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점과 장애인 성폭력을 엄히 처벌하는 최근의 경향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양형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를 내리기는 신중해야 하지만 부당한 양형이라고 생각한다.

선정의견

● 김재왕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인권 향상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장애여성공감의 배복주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장애여성공감의 주요 활동도 소개해 주십시오.

A. 저는 장애여성공감이 창립된 1998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배복주라고 합니다. 현재는 장애여성공감의 대표이고, 성폭력상담소 소장도 함께 겸직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인권운동을 하는 공간이며, 일상적으로는 교육, 상담, 연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장애, 여성(젠더), 사회적 소수자 이슈에 대한 연대활동을 합니다. 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활동,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독립을 지원하는 활동, 발달장애여성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을 통해 장애여성의 경험에 집중하고, 이러한 경험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공유되고 있는지를 소통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지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가 연결된 이슈에 대응하고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것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장애여성공감에서는 성폭력상담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애여성성범죄와 관련하여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A. 장애여성공감 부설인 성폭력상담소는 2001년도에 개소하여 올해로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장애인성폭력 사건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상담소에서 지원한 성폭력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겪게 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의 경우에 법원에서 성폭력을 판단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이러한 판단요소의 변화 필요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토론회는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30분, 이룸센터 누

리홀에서 진행됩니다.

Q.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처럼 낮은 형이 선고되었을까요?

A. 보내주신 판결문을 보니, 통상적인 감형사유와 달리 피고인의 건강상의 이유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고인이 어디가 많이 아픈가?”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사유로 감형되는 것은 저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사건에서도 많이 적시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최근 저희 상담소에서 지원한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볼 때, 일반적인 감형사유(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합의 등)와 달리 주목할 만한 감형사유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고령인 점, 폭행협박이 경미한 점 등입니다.

위 판결문에서도 저의 생각으로는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이 감형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Q. 이처럼 양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받는 사건들이 많은가요?

A.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저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사건 중에 장애여성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처벌 형량은 징역 2~3년이 다수였으며, 간혹 7년 이상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1년 도가니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졌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높아진 형량만큼 선고결정이 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법 개정 이전보다 선고형량이 높은 편이지만, 장애인성폭력사건의 특성상 가해자가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감형사유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 폭행이



나 협박의 정도가 약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감형의 사유가 됩니다. 더한 문제는 검찰에서 높은 형량에 따른 입증책임이 강화되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진술능력이 문제가 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기도 하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황진술이 매우 중요하데, 지적장애여성은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가 증거불충분 혹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Q.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시나요?

A. 장애인성폭력사건에서 피해 장애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에 판사는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장애가 어떤 특성이 있으며 그 특성이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했는지 등에 잘 살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엄중한 선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혹시 장애여성성폭력범죄에 대해 사법부나 관련 기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A. 2013. 6. 19.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폭력피해자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의 측면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되면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정, 피해자 진술조력인 지정, 진술녹화 시 신뢰관계인동석 의무,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전담경찰, 전담재판부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과 기관들이 장애인피해자와 밀접하게 소통하게 되거나 지원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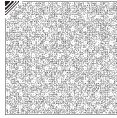
그런데 그러다보니, 피해자의 장애를 잘 알지 못하거나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참여자들이나 기관들은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Q. 토론회에 꼭 참석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소중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A. 고맙습니다.



광화문 역사 농성 4년 문화제 '일상으로의 초대'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후 원고인 지적장애인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사건에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5399 판결 체불임금 |

사실관계

원고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피고 회사에서 2006. 8.부터 2010. 7.까지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4. 1. 법원에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임금채권은 그 변제기가 2010. 7. 도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소 제기 당시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소 제기 이후 원고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었으므로 임금채권의 권리행사 기간은 성년후견인 지정결정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며, 권리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장애는 시효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신의칙 위반에 관하여서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선정의견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 후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다. 행위능력 제도는 나이나 후견개시를 기준으로 행위능력의 유무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이었던 원고는 임금청구를 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가 없었다. 또한 정신지체 3급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청구소송 자체는 본인 명의로 제기한 원고가 의 능력이 없었는지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원고는 사실상의 장애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현재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임금채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일단 시효완성 이후에 피고 회사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시효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선정의견

● 이 용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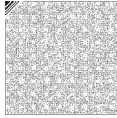
그렇지만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판결¹²⁾도 있어, 사실상의 장애만으로도 시효항변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교통사고처럼 일회적 불법행위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와 달리, 근로 제공 과정에서 채권자(근로자)에게 장애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임금은 이미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점에서 지적장애인의 임금청구사건에서는 채무자보다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근로를 제공받고도 시효기간이 지나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결과를 용인하게 된다. 20대 국회에서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강요한 근로로 발생한 임금채권은 그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¹³⁾ 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종종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효중단을 통해 채권의 행사방안을 보장할 필요성 때문에 제안된 것이다.¹⁴⁾ 이 사건도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악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개정안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강요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이 되는 것이고, 이 사안은 지적장애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록 시효 정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효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으로 양자는 독자적으로 지적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이 사건 판결은 장애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1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13) 9대 국회에서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으로 인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14) 위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8쪽 참조.



아버지가 지적장애 1급 아들을 망치로 가격하여 살해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111 판결 살인 |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41세)의 아버지로서 자신이 곧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가족인 처와 둘째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새벽 6시경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망치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힘껏 가격하고 목을 졸랐고, 피해자는 두개골 종합적 분쇄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서 배심원 9인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으며 양형에 관하여는 4명이 징역 5년을, 3명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명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년간 보살핀 점, 범행 동기와 정황,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선정의견

이 판결은 장애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판결이다. 이 사건 범행은 저항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년간 돌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둘째 아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동기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생활고를 비관해 자기 자녀를 살해한 부모에 대하여 내리는 처벌에 비해 이 사건 판결은 관대하다.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도 관대한 편이다. 아마도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은 중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나 장애인 노예 노동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보다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장애인에게 방어 능력이 부족하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이 오히려 관대한 처벌의 이유가 되었다. 장애인 성폭력이나 노예노동에서의 장애인은 순수한 피해자로 보이지만, 이 사건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가해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배심원과 판사들은 피해자를 스스로의 삶과 가치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부담으로 본 것 같다. 이 사건 배심원과 판사들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지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모두 소중하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소중하다. 한편 장애인은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장애인을 부담으로 여기는 시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추가 비용이 드는 규제이고, 활동보조인 서비스처럼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장애인을 소중하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이 사건 판결에서 우리 사회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 같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소수자의 목소리가 입법부나 행정부에 반영되기 어렵다. 사법부는 다수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소수자를 대변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다수자들의 통념보다 한 발 더 소수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사회가 장애인을 부담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장애인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그 인권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배심원의 의견 뒤에 숨어 안주하였다. 오히려 배심원 중 다수의견인 징역 5년보다 후퇴하였다.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서 어떤 염전주는 폭행과 학대 등을 이유로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은 그보다 엄한 처벌이 됐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 판결은 장애인을 부담으로 여긴 나머지 장애인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를 망각한 판결이다. 그래서 이 판결을 걸림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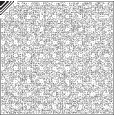
• 김재왕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에서
주목할 판결로
선정된 판결은
총 2개 판결입니다.

주목할 판결

- 1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시외이동권소송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791 판결 |
- 2 염전 노예사건의 민사소송으로 피고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사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합11231 |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시외이동권소송 1심¹⁵⁾>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8013 판결 손해배상(기) |

사실관계

원고 A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며, 원고 B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으로 원고 A와 B는 휠체어를 이용한다. 원고 C는 서울시 거주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계단의 이용이 불편하다. 원고 D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영유아를 동반하여 이동할 때 유모차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이며 E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령자로 원고들은 모두 교통약자이다.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이상 교통행정기관)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F,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G(이상 교통사업자)이다.

원고 A, B, C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 교통행정기관에게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되도록 시책을 추진할 것 등을 청구하였고, 교통사업자에게는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것을 청구하였다. 한편 원고 D, E는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원고들은 본안전 항변으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구제청구는 민사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교통사업자들의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통행정기관은 휠체어 승강설비의 설치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인 국토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관련 계획 내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적극적 조치명령은 법원의 구제조치의 영역을 넘어서고 시정을 위한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여 적극적 조치를 명하지는 않았다.

사실관계

교통사업자인 E와 F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상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승하차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휠체어 승강설비가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으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 F 및 G 주식회사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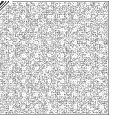
현재 이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15) 이 소송은 공익소송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소명, 법무법인 제이피에서 총 9명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선정의견

이동은 이동 그 자체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동이 불편하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자원들로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입법자들 역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1997. 4.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실효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2005. 1. 27. 별도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과 도로 부분을 분리하여 교통약자법을 제정하였으며, 2007. 4. 10.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이동의 문제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 김용혁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장애인의 이동 문제는 심각한 지경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행정기관들과 교통사업자들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약자법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하고 있다. 교통약자법은 교통행정기관들에게 각종의 계획 수립과 교통사업자 관리, 감독, 제재의 수단들을 마련해 두었고, 교통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편의의 정도를 규정하였지만, 실제 교통행정기관들은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관하여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고, 교통사업자들을 관리, 감독하거나 제재를 한 적도 없다. 교통사업자들은 교통행정기관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교통행정기관들을 탓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후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9년이 지난 때에 장애계에서 일하는 여러 변호사들이 연합하여 본 소송을 진행하였고, 오랜 공방 끝에 나온 것이 본 판결이다. 법원은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시키도록 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지만, 교통행정기관들로 하여금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게 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저상버스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손해배상청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본 소송을 진행한 장애계의 변호사들은 본 판결이 형식적인 법논리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실질적 취지를 도외시하였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 교통사업자들도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본 판결로 인하여 우리 사회 내 장애인의 이동과 생존 문제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선정위원회는 본 판결을 주목할 만한 판결로 선정하였다.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문애린 활동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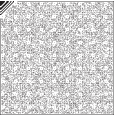
A.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린입니다. 전장연에서 조직과 이동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본 소송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요?

A. 2001년부터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시작하고 2005년에 교통약자법이 만들어 지면서 시내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가 만들어졌지만, 10년이 흘러도 아직까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지역과 지역을 오갈 수 있는 광역버스와 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장연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함께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이 시외이동에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법에 호소하고자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Q. 시외이동권연대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A. 시외이동권연대라는 정식 명칭은 없습니다. 다만 10년 전부터 시내이동과 더불어 시외이동의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장연과 함께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에 관심 있는 분들 및 단체들이 시외이동권 소송, 각종 토론회, 주기적인 시외이동 버스타기를 진행하는 한편 교통약자법의 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법 개정은 시외이동을 기반으로 차량연한에 따라 대폐(교체)되는 차를 저상버스(시내 및 시외)로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담기 위한 것입니다.



Q.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A. 소송 과정에서는 장애인 외의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노인을 섭외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시외이동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그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소송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이동에 관련된 편의시설은 장애인만 해당이 된다는 편견 때문에 함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Q.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체적인 평가는 어떠합니까?

A. 솔직히 큰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교통약자법에도 '교통약자가 이동함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를 소송으로 풀어가려고 한 것인데, 법원 또한 책임과 책무를 이행해야 되는 정부와 지자체는 쏙 빼 놓고 아무런 힘이 없는 버스 회사에만 그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판결을 선고하여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중 장애인에 한해서만 일부 인용판결을 내린 것을 보며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범위가 이정도인가 싶기도 합니다.

Q.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A. 지금까지 쪽 해왔듯이 시외이동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자 버스타기 운동은 물론 2017년 예산에 시외이동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안으로 교통약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법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 기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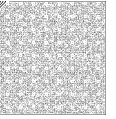
A. 이동은 그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행동이 느리고 몸이 무겁다는 이유로 버스를 타거나 이동을 하는데 차별을 두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자신 또한 언젠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비단 교통약자만의 것이 아닌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차별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Q. 항소심에서는 부디 기대하는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A.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외이동권 투쟁



염전 노예사건의 민사소송으로 피고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사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합11231 판결 손해배상(기) |

사실관계

피고는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염전에서 근로를 제공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43, 사회지수 45)이다. 원고는 2001년경 직업 소개소를 통하여 피고의 염전에 유입되었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고, 염전노예 사건이 문제가 되자 피고를 목포시로 데리고 나가 감금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영리유인, 준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감금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원고에게 8,000만원을 공탁한 바 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염전의 가동 기간인 3월에서 11월 사이의 기간 이외의 기간에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으로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지는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였다. 피고는 이 최저임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변제공탁이 시효이익의 포기라던가 소멸시효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이는 배척되었다.

또한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위자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염전에서 일하는 동안 숙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비용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정의견

● 최정규

2014년 2월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이후, 경찰수사를 받기 시작한 염주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소유한 염전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했던 피해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을 입금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대부분의 염주들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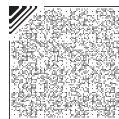
“과연 최저임금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염주들의 책임은 끝이란 말인가?” 이러한 질문에서 2014년 9월 염주들에 대한 민사소송이 시작되었고, 올해 2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 같은 날 선고된 8건의 판결 중 특히 이 판결은, ①가장 많은 쟁점을 담고 있는 점, ②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③관련 형사판결이 ‘2015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에서 걸림돌 판결로 선정된 사건¹⁶⁾인 점을 고려되어 ‘주목할 판결’로 선정되게 되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선정위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장애인들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시킨 것이라는 염주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염주들이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피해 장애인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한 부분, 통상적인 염전운영기간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피해 장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 피해 장애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는 염주들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보다는 높은 액수를 정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염주들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기준이 농촌일용노임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라고 판단한 부분, 10년이 경과된 임금 부분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염주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부분은 다소 아쉽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¹⁷⁾ 또는 상고심 판결은 선정위원의 만장일치로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16) 2015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중 걸림돌 8번 판결, 신안 염전노예사건의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의 진정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판결에 반영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0. 16. 선고 2014고합57 판결)

17) 광주고등법원 2016나11225 사건



발행일 : 2016. 10. 28.

집 필 :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
김용혁, 김재왕, 박김영희, 유재규, 이용재, 이정민, 제철웅, 최정규

발행처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전화 02) 2675-8153 / 팩스 02) 2675-8675

제 작 : 리드릭 02) 2269-1919

ISBN : 979-11-85498-34-8 93360